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건입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 06.)

1.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84-129번지 외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우편접수 대상 :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단, 우편접수가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 기간 : 2021.09.27(월)~09.30(목) (※ 9.30.(목)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양식1] 마음에온 건입동 행복주택 청약신청서 1부만 작성하여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 10111 ☎ (031)267-4843,4844

[※ '21.10.14(목)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신 분에 한하여 '21.10.15.(금) ~ 10.21.(목) 까지 5.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입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위탁업체를 통해 시행됩니다.
접수된 모든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 현장 접수 기간 : 2021.09.27(월)~09.28(화) (※사전예약 기간 : 2021.09.16(목)~09.17(금))
 - 접수처 (3개소)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 ▶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02 번영빌딩 2층 202호)
 - ▶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현장접수 시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
- 입주자 모집 관련 상담 및 사전 예약 ☎ (031)267-4843,4844

'19.09.27.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6.)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주택별 신청대상이 상이하오니 세부사항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1.09.07. ~ 2002.09.06.)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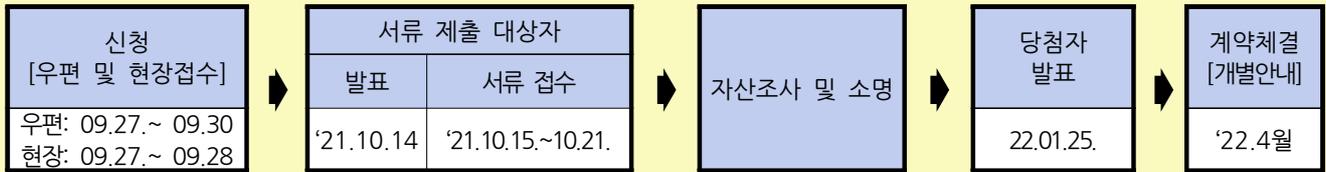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6.09.06. 이전 출생자)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등기우편 접수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 홈페이지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대상	공급 유형	모집호수		세대당 면적(㎡)			임대조건			전환시 임대조건		
		입주자	예비 입주자	전용	공용	계약	표준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청년	18형	46	92	17.55	32.12	49.67	30,240	6,048	24,192	148,680	(최대) 45,240	73,680
							(최소) 6,240	198,680				
	소득무	58	116	36.79	65.09	101.88	28,560	5,712	22,848	140,420	(최대) 42,560	70,420
							(최소) 6,560	186,2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7형	58	116	36.79	65.09	101.88	50,000	10,000	40,000	245,830	(최대) 75,000	120,830
주거급여	30A형	25	50	30.03	53.71	83.74	31,200	6,240	24,960	153,400	(최대) 46,200	78,400
											(최소) 7,200	203,400
고령자	30B형	15	30	30.03	53.71	83.74	39,520	7,904	31,616	194,300	(최대) 58,520	99,300
											(최소) 8,520	258,880

- 모든 주택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개별난방(LPG)입니다.
- 이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2022.02.26.입니다.(건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당주택 **공급대상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주택호수는 전산추첨에 의해 정해집니다.
- 모든 주택은 계약 체결 후 잔금납부 확인 및 시설물 점검이 완료된 시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입주시 희망자에 한함)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 전환은 불가합니다.
증액 전환은 표준임대보증금의 50%범위 내에서 전환 가능합니다.(전환율 6%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증액 및 감액전환이 가능 합니다.
 - 전환기준 : 증액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전환율 **6% 적용**)
감액시 전환 후 월임대료의 30개월분 금액을 초과한 범위 내(전환율 **2.5% 적용**)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지며,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부대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계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9.07.~2002.09.06)
- ①-㉓ (사회초년생) (1981.09.06 이전 출생 또는 2002.09.07 이후 출생인 자 포함)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589,9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㉓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㉓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㉓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천
-----------	---------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㉓ (신혼부부) 혼인증인 자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㉒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2014.09.07. 이후 출생인 자)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2014.09.07. 이후 출생인 자)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461,251원 합산)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

3-3.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1956.09.06. 이전 출생)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589,957원 이하	120%
2인	5,018,789원 이하	110%
3인	6,240,520원 이하	100%
4인	7,094,205원 이하	100%
5인	7,094,205원 이하	100%
6인	7,393,647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

3-4.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접수		자격검증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접수서류] - 청약신청서 1부 [등기우편 접수] -기간 : '21.09.27~'21.09.30 -보내는 곳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10111 ☎ (031)267-4843,4844 [현장 접수] -기간 : '21.09.27~'21.09.28 -접수 장소 : 3개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 • 서귀포시주거복지센터	[발표일자] '21.10.14. 청약신청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자 선정 및 발표	[서류접수] '21.10.15 ~ '21.10.21 [제출서류] - 본문(5. 제출서류) 참고 ※ 공급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접수 : (우)1011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 (031)267-4843,4844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자격 검색	[당첨자발표] '21.01.25.(화) 17:00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게시	[현장계약] '22.4.예정 당첨자 개별안내 [계약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 신청접수

- 신청접수 서류는 청약신청서 1부입니다. (신청서양식- 양식1)
- 신청접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필수)
 ※ 청약신청서 우편 접수처 : (우)1011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 (031)267-4843,4844
 ※ 청약신청서 현장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서귀포시주거복지센터

■ 서류접수 대상자 발표

- 청약신청서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서류접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접수 대상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통지 됩니다.

■ 서류접수(선정된 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입주자격 검증을 위해 대상자 발표 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양식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접수처 : (우)1011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 (031)267-4843,4844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인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9.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21.10.14(목)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제출 방법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21.10.15(금)~10.21(목)]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1011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 ☎(031)267-4843,4844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 세대 모두작성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대상 : 신청자 · 작성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 공단</p>
	사회초년생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국민연금공단 등</p> <p>국민건강보험 공단</p>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지방고용 노동청</p>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 공단</p>
		<p>[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 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p>한국예술인 복지재단</p>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 공단</p>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공급 순위를 적용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p>국민연금공단</p> <p>국민건강보험 공단</p> <p>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해당 직장</p> <p>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p> <p>해당 학교</p>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며 혼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제출필요)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신청자, 배우자 각각)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호실은 공급대상자 및 공급유형에 따라 총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2배수)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 대상자 별도안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p>(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p> <p>※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일 적용</p>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대학생, 청년은 신청자본인)**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야'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축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488 1469 645">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합니다.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p>갱신계약 등</p>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00 293 1469 465">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릅니다. • 갱신계약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p>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p>중복입주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p>신청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p>지구 및 단지특성</p>	<p>■ 단지특성</p> <p>본 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유지인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행복주택입니다.</p> <p>본 단지는 1층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2~3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4~11층 주거공간(행복주택)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입니다.</p> <p>주거공간은 전용면적 37㎡ 58세대, 30㎡ 40세대, 18㎡ 46세대 총 144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p> <p>주차시설은 1층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 32대, 1층 외부 근린생활시설 및 행복주택 전용 주차장 16대, 2~3층 행복주택 전용 주차장 91대로 총 주차대수는 139대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기념관 부설주차장과 행복주택 주차장 출입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고, 세탁기/에어컨 등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4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으로 바다가 접해있고 남측으로 산지천, 동측에는 사라봉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제주 여객터미널 및 공연장, 목관아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

건입동(전용 37㎡)



건입동(전용 30㎡)



건입동(전용 18㎡)



※상기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실내환경

항 목		주요 마감		
건축	현관	바닥: 폴리싱타일, 가구: 신발장		
	방/거실	벽,천정: 친환경 실크벽지, 바닥: 중보행용 장판, 주방가구(냉장고장 제외), 가스쿡탑		
	화장실	벽/바닥: 도기질/자기질 타일, 기타: 욕실장, 위생도기류		
전기	조명기구	LED	무인경비시스템	공동현관 로비폰
	홈네트워크시스템	설치	월패드	10인치 터치스크린(홈오토연동)
기계	보일러	가스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어컨	냉방용 배관 매립(거실 스탠드형, 침실 벽걸이형, 18형 거실 벽걸이형)		

■ 사생활권 및 환경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필로티, 휴게정원, 하늘정원 등) 및 부대시설 설치로 인근세대는 생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시설이 설치되어 소음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배치상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오전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단지 비상도로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용 카메라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도식 구조에 따른 복도창 설치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및 설치

- 에어컨 설치 시 침실 및 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매립되어 있어 별도의 타공 없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에어컨 설치 시 지정된 장소(발코니 내)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세대에 따라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 및 환기

- 습도가 높은 날 창을 열어두거나, 동절기 등 실내외 온도차가 큰 시기에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 등으로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이 조성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실내 환기 등을 통한 결로 발생 예방이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

-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공간에는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 1층 옥외에 가스저장탱크에는 안전을 위하여 접근을 금지합니다.
- 세대 내 화재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와 주방 상부 내 자동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방 가스쿡탑과 발코니 보일러 인근에 가스감지기 및 가스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층 화재 대비를 위해 11층 6세대를 제외한 세대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용부위(복도, 승강기 등)에 물건 적치는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에너지 성능 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일반 등급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
- LED조명,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 기타

-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5층 513호~517호 앞 공용 발코니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 및 청소를 위해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행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 각 단위세대 타입별 평면도의 실별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별가구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시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꺾이는 일부 평형(“ㄱ”형)은 문짝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 [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벽체 등) 포함]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에 개폐 가능한 갤러리창(실외기 설치장소)이 설치되며, 갤러리창은 강풍 시 우수유입이 일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세탁기용 콘센트의 위치에 따라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결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1,0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내용	적용 여부	구분	내용	적용여부
건축 부분	단열조치 준수	적용	기계 부분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기계 부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전기 부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해당없음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해당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10.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주택명	사업주체 및 감리	주택주소	시공업체
건입동 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접감독	건입동 984-129번지의외 7필지	원일건설(주) 남광건설(주)
건설 위치 약도			

11. 현장 접수 위치

<p>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p>	
<p>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02 번영빌딩 2층 202호]</p>	
<p>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 1층]</p>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2021.09.0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